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1. 8	. / (총 15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충청남도	과 장	이 동 유		041-635-2640
보건정책과	담 당 자	가 현 자		041-635-26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장	김 춘 래		043-719-3701
의약외품정책과	담 당 자	김 지 연		043-719-370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준 헌		044-202-1750
방역총괄팀	담 당 자	윤 정 희		044-202-1755
외교부	과 장	강 대 성		02-2100-8167
영사서비스과	담 당 자	차 지 연		02-2100-818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미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준수해야될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인별 상세 이동경로**가 **공개** 되거나, 성별·연령 등 특정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대본과 지자체에게 지침에 맞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월 13일 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높아서 불만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과태료 부과지침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마스크가 생활방역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고 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량의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공공시설에 여분의 마스크가 비치 되도록 현장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 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해 어제(11.7.)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시행하였다.
  - 이번 개편은 그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고,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까지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 확산을 통제 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이에 따라, 매주 발표하는 **위험도 평가 기간과 지표도 정비**한다.
  - 먼저, 감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최근 2주간'에서 '1주간'으로 짧게 하고, 최근 4주간의 경향을 비교한다.
- 신규 발생 환자 수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제공 역량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 발생 수와 함께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 여력도 평가한다.
- 이와 함께 각 권역별로 정밀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므로 주요 지표 들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 지난 한 주(11.1.~11.7.)는 **거리 두기 1단계 하에서** 사회 경제적 활동이 계속 확대되며 환자 수가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8.7명으로 그 전 주간(10.25.~ 10.31.)의 86.9명에 비해 1.8명 증가하였다.
  -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8명으로 그 전 주간(10.25~10.31.)의 22.7명에 비해 3.1명 증가하였다.











평생친구

###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0.11.~10.17.	10.18.~10.24.	10.25.~10.31.	11.1.~11.7.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2.1명	75.3명	86.9명	88.7명
60세 이상	22명	30.1명	22.7명	25.8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8명	20명	18.3명	21.7명
<b>집단 발생<sup>1)</sup></b> (신규 기준)	11건	14건	16건	7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1.8%	8.4%	12.8%	12.7%
임리 영호 고시 중 비를	11.076	0.476	12.076	(98/773)
방역망 내 관리 비율 <sup>2)</sup>	67.9	65.5	55.3	60.5
즉시 가용 중환자실	_		150개	137개
국시 기당 당된시킬	_	_	(10.31.9시기준)	(11.7.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루 평균 65.4명이 발생하였으며, 충청권은 14.1명, 그 외 권역은 모두 5명 이내로 발생해 모든 지역이 1단계 수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11.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5.4명	14.1명	1명	1.3명	4.4명
60대 이상	20.7명	1.3명	-	0.3명	2.1명
<b>즉시 가용 중환자실</b> (11.7.09시기준)	65개	22개	12개	7개	13개

-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대를 유지 중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37개**(11.7.9시 기준)를 확보하고 있어, 중환자에 대한 치료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내외의 등락을 반복하며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등 불안 요인도 존재한다며,
-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공공** 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 하고, 경찰과 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1.7.) 국무총리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홍대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등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수단인만큼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평생친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급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요양병원 1,473개소, 요양시설 3,754개소, 노인공동생활가정 1,883개소, 주야간 보호기관 448개소. 정신병원 419개소
-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지침과 점검표에 대해 모르거나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 요양시설은 비접촉 면회공간이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소, 3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충남, 충북
  - \*\* 서울 2개소 29명, 경기 2개소 2명, 부산 1개소 4명, 충남 2개소 3명
- 정부는 11월 9일(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 감염 취약시설의 중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 4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 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 중국은 최근 자국 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11월 11일(수)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 불문)은 탑승 전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PCR 검사)를 2회 실시하여야 한다.

### < 항공편별 변경 전·후 검역 조치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기편 입국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2회(3시간 이상 간격) 실시	*1차 및 2차 검사는 각기 다른		
부정기편 입국자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PCR 검사 & 36시간 내 2차 검사 실시	의료기관(주한중국 대사관 지정)에서 실시 필요		

- 당초 중국 측은 11월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이 국내 상황 (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결과,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혐의하였다.
- 정부는 중국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중국측 시행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생친구

항공사를 통해 **11월 11(수)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 5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체를 집합제한으로 전환** 하여 관리하다.
  -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마스크 비치, 자연 환기 또는 기계 환기 등 환기시설 완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고발 및 즉시 집합금지 전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10월 12일부터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시(市)지속방역추진단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평 생 친 구

- **인천광역시**는 시, 군·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11월 6일(금)부터 11월 10일(화)까지 관내 **콜센터 5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출·퇴근 시 발열체크,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종사자 간 거리 유지, 환기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10월 26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장애인거주시설 167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자원봉사자 집단 활동 시 1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1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활동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경기도는 임시격리시설 1개소와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36병상 중 208병상(사용률 42.1%), 임시격리 시설은 총 40실 중 17실(사용률 42.5%)을 사용하고 있어 수용 여력은 충분하다.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시설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평생친구

## 6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충청 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일주일(11.1.~11.7.) 동안 총 **92명의 확진자**와 집단감염 2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 등 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및 도 긴급** 대응팀을 현장에 지원하고, 콜센터 입점 건물 소독 및 폐쇄, 추가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 아산 소재 사업장의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업장 직원에 대한 예방적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11월 9일(월)부터 15일(일)까지 1개 중점관리시설과 5개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 (중점) 카페, (일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평생친구

##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1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977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7.)는 적발된 무단 이탈자가 없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조치사례,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무단이탈자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①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이탈에서 제외하고, ② 긴급대피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계도 조치하며, ③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최초에 한해 계도\*한다.
  - \* 계도할 경우에도 안심밴드 착용(또는 시설격리) 원칙, 거부 시는 고발조치

### ---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평생친구

□ 11월 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301개소**, ▲ 실내체육시설 263개소 등 22개 분야 총 5,88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평생친구

#### 4 강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중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휴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 친구

#### 별 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